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에 의한 国民
住宅 債券첨가 매입事務取扱規程中
改正의 件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국민 주택채권첨가 매입 사무취급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별표 1의 별지 부표 제 8항의 “건축허가” 나호 단서에 의거 국민주택 채권첨가 매입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별표 4와 같다.

제 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조 (선급이자) 영 제 7조 제 2항에 의한 실제 매출일로 부터 매출일까지의 선급이자의 이자율은 당해 년도의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매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선급한 이자를 환수한다.

별표 3. 국민주택채권 첨가매입 일부 항목 면제기준중 “5.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를도입한 차관기업체”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첨가 매입 제외 대상건 축물.

1. 교육용 건물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의 교육용 건물로 직접 쓰이는 건물에 한한다.

2. 종교용 건물

- 가. 교회
- 나. 사찰

3. 자선용 건물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목적수행에 직접 필요한 업 무용 건물.

4. 공익용 건물

- 가. 기념관
- 나. 공회당
- 다. 도서관

5. 목축업기타

- 가. 목축장

6. 동물원

- 가. 식물원
- 나. 공장의 경우는 인구 50만인 이상의 지역에 있어서는 첨가 매입하여야 하며 기타 지역에건 설되는 공장은 첨가매입 대상에서 제외됨.

부칙

이 고시는 1973년11월15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제 9 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